10월 세법 이슈

제 3 호
2014년 10월 20

"TAX007, WITH YOUR DREAMS"
(100-160) 서울시 중구 퇴계로28길 8, 만수빌딩 201호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 www.tax007.co.kr TEL:2279-0246/0224

2014.11.29.적용되는 금융실명법

19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모든 금융거래에서 실명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차명계좌는 사실상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9일부터는 탈세, 자금 세탁 등 탈법 행위 목적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명거래로서 처벌대상자는 차명거래자와 중개한 금융조사자가 대상이 되고, 2013년부터 적용되는 증여세법에 의하여 입금시부터 증여추정되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누락되는 금액에 대하여 종업원 등의 다른 사람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문제도 등장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 관한법률(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법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자금의심거래에 대하여는 금액 제한을 없애서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금융회사가 반드시 현금거래시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③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라 함은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금액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매월 셋째 주 화요일 국세청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해서 세금문제상담, 고충에 대한 세무처리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날로 시행합니다. 평소에 세금문제로 고충이 있는 분은 해당하는 화요일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 증가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유흥주점사용분, 골프장사용분, 주말에 사용한 분, 사적경비로 의심되는 부분, 장소가 원거리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입증하라는 소명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내역에 대한 부분은 사용하실 때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하식세무사의 잘나가는 사장님 절세공식, 어울림, 2013.1.15"의 인세 전액의 2배가 사회연대은행과 열매나눔재단의 사회적기업사업에 기부됩니다.

